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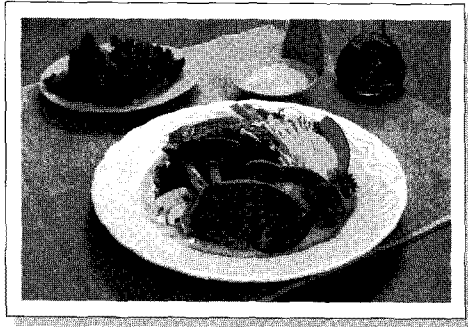
## 성공적인 육우자조금 사업추진을 위해 바란다



**박종희**  
육우분과위원회 총북도위원장

자조금이란 특정사업의 수행으로 혜택을 받는 자가 그 사업의 효과를 인식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스스로 부담하는 제도이다. 광의의 자조금은 이익집단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여러 형태의 자조적 재원을 말하며, 여기에는 단체의 회비, 찬조금, 기부금, 잡부금 등이 포함된다. 협의의 자조금은 법정규정, 또는 집단의 결의로서 의무적 또는 자발적으로 부과 징수하여 특정 목적에 사용하는 제도적 기금이며, 일반적으로 자조금은 협의의 의미를 가진다. 법정규정에 의한 자조금을 법정 자조금 또는 의무자조금이라 하고 법정 규정이 전제되지 않고 집단의 결의에 의해 스스로 납부하는 형태의 자조금을 임의자조금이라 한다. 육우 자조금은 임의자조금으로 결의 되었다.

인터넷에서 한우와 육우의 차이에 관한 글들이 많이 있다. 육우에 대하여 국어사전식 풀이를 해놓은 것도 많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글도 몇몇 볼 수 있다. 육우를 키우는 농가들이 그 글을 보면 울화가 치밀 정도도 있다. 호주산 젓소나 네덜란드산 송아지를 수입해 키워서 고기소로 낸다는 글도 있다. 오히려 미국산 소고기보다도 육우를 모르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육우농가들은 열심히 소만 잘 키우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자신만의 노하우를 쌓아 가느라 하루도 실패없이 바빠 움직인다. 그



만큼 자부심도 대단하다. 한우 못지 않은 전문적인 사양관리로 육우의 품질은 한우와 대등함에도 불구하고, 맛있는 고기, 질긴 고기로 인식되는 실상은 비참하기까지 하다.

이런 현상은 육우의 홍보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얼마 전 마스크를 통한 육우에 대한 홍보가 있었고, 그 홍보의 효과로 육우고기를 어디에서 구매할 수 있나 하는 문의 전화가 쇄도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육우를 소매할 수 있는 매장은 전국적으로 봐도 열 손가락에 꼽을 정도이다. 아무리 홍보를 하여도 소비자가 손쉽게 구입할 수 없다면 '그림의 떡'이 아닐까?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행정적 배려도 필요하다.

근대산업과 국제화 사회에서 육우산업이 생존 발전하려면 당면 문제점을 적시에 확인·조정하여 생산, 유통, 소비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현재 육우산업은 이 세 가지 요인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것은 농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그러므로 육우자조금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국내산 원유로 제조된 우유와 유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해 1999년부터 시작된 낙농자조금사업이 5년에 걸쳐서 큰 차질없이 추진되어 왔다. 비록 모든 낙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된 의무자조금제도는 아니지만 70~80%수준의 낙농가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쾌거를 이룩한 것이다. 낙농가들의 생산자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주관이 되어 자조금을 조성하고 그렇게 조성된 자발적인 임의자조금과 그에 상응하여 지원된 정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하여 소비촉진활동을 전개해왔다. 이 같이 추진되어 온 임의낙농자조금제도는 전 축종에 걸쳐 의무자조금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법률 즉, 「축산물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는데 시금석이 되었다. 결국 낙농자조금은 2006년 의무자조금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지난 3월 제 3차 육우자조금추진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그 결과 2009년 하반기부터 임의육우자조금을 거출하기로 하였으며, 거출 기준은 사육규모별 정액제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두당 납부율로 환산시 1,000원~4,000원 정도 산출된다.

타 축종 자조금은 의무자조금으로서 자조금 거출에 어려움은 없다.

특히 육우는 낙농자조금을 기 납부한 젖소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유·육 겸용 사육농가에서는 육우자조금 납부를 기피할 가능성이 있고, 육우전문 사육 농가가 아닌 군소단위 축산농가는 육우에서 한우로 업종 전환이 용이하여 자조금 납부를 기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업 육우농가라도 자조금 혜택 무임 편승 농가와 차별성이 없기에 자조금 납부를 기피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육우자조금도 해당 관련법을 완화 개정하여 의무 자조금으로 전환하고, 자조금 운용을 위해 자조금을 거출한 자조금위원회의 독립적 운용을 보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육우사육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야 말로 육우자조금 제도에 있어 가장 큰 활화산 역할을 할 것이다. 농가 스스로 제 역할을 다 할 때 비로서 육우의 얼굴이 알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각 시·도·군지부에선 육우자조금 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농가에게 인지시키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육우자조금의 예상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이해 당사자들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도 과제임을 상기해야 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조금을 출연한 이해당사자가 사업의 연속성에 대한 당위성을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자조금 사업으로 추진된 육우 소비촉진활동에 대한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소비촉진사업의 추진방향을 재정립하고 육우의 소비확대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육우가격 폭락으로 국내 육우 산업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육우농가 스스로의 자조금 거출을 통해 육우 얼굴 알리기와 육우고기 소비촉진에 일대 전기를 마련하여 육우산업도 발전하고 이에 더불어 낙농산업도 발전하며, 더 나아가 축산업 전체가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한다. ☺